# 수탁기관운영위원회규정 3-1-27

규정번호 3-1-27
제정일자 2016.9.28
최근개정 2025.3.31
개정차수 5차 개정
관리부서 예산감사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이 수탁 운영하는 기관의 업무지원 및 관리 등의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수탁기관의 신청 및 계약에 관한 사항
2.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
3. 수탁기관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4. 수탁기관장 추천에 관한 사항
5. 기타 수탁기관 운영의 주요사항 등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부총장,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, 평생교육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관련학과 학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18.08.27., 2018.12.10.,2025.3.31)

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4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)

부 칙(직제규정) <2025.3.3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

<1> - <2> (생략)

<3> 수탁기관운영위원회규정(3-1-27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항의 “평생교육원장”을 “평생교육본부장”으로 한다.

<4> - <17> (생략)